

보도시점

(전매체) 1. 2.(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2024년 중소기업부 정책 돋보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 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오준영 (044-204-7853)



현행	개정안
<p>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p> <p><신설></p>	<p>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p> <p>(현행과 같음)</p> <p><u>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p>